농수산물 품질관리법 (약칭: 농수산물품질법)



[시행 2024. 9. 20.] [법률 제20438호, 2024. 9. 20., 타법개정]

농림축산식품부 (농축산위생품질팀-농산물) 044-201-2278, 2218 해양수산부 (수산물안전정책과) 044-200-5803, 5804 식품의약품안전처 (농수산물안전정책과) 043-719-3204 해양수산부 (수출가공진흥과) 044-200-6297

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

제88조(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 와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, 3, 23.>

- 1.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
- 2.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 물 및 수산가공품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외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검사기준이 없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3. 3. 23.>
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·용기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, 2020. 2. 18.>
- 1.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 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
- 2.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·가공시설등에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게 생산·가 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(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 ·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- 가. 「원양산업발전법」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
 - 나.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정한다)을 신고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어선
- 4.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여도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종류와 대상, 검사의 기준·절차 및 방법, 제4항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3. 3. 23.>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